

태왕THE아너스 오페라 [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]

■ 기본 서류 [모든 계약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('21.06.30)이후 발행분에 한함]

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	해당			
○		무주택 서약서	본인	• 건본주택비치
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○		인감증명서&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)
○	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	○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 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
○	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	• 성명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 기재사항 표시
	○		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이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최근3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	○		직계비속	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(최근1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○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
	○		배우자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○		직계존속	• 부양가족으로 산입한 직계존속이 분리세대인 경우 •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발급기간 :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)
	○		직계존속	•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)
	○		직계비속	• 피부양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) ※ 단,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- 30세 미만 미혼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30세 이상 미혼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○		세대원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발급) - 발급기간 :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
	○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(수도권)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-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
○		자금조달계획서	-	• 모든 주택형 제출

■ 부적격시 소명 서류

해당서류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건물 등기부등본	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무허가건물 확인서	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
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	소형,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)
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	기타 당첨 자격(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) 확인을 위한 자료

■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

- 위임장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1통(아파트 계약 위임 본인발급용) , 대리인 신분증, 대리인 도장(서명)